2. 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 규정
가. 금융투자업규정 (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핵심상품설명서 기재항목 구체화 등)
나.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(전환사채의 발행 제한 등)
다.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(금융회사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시 심사중단 사유 및 재개 요건 규정)
라.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(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승인심사 중단 시 심사재개 요건 규정)
마.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 · 신고 등에 관한 규정
(불공정거래 포상금 지급대상에 시장질서 교란행위 추가 등)

2. 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 규정*

가. 금융투자업규정 (2021/10/20 개정 · 2021/10/21 시행)[1)]

1) 개정 이유
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8128호, 2021. 4. 20. 공포, 10. 21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한편,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· 보완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집합투자규약 기재사항 구체화(제7-8조 제5호~제8호 신설)

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는 사실

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금전대여로 운용하는 경우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투자자 제한 관련 사항 등

— 경영참여목적으로 운용하는 경우, 경영참여목적 펀드라는 사실

— 일반 사모펀드가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사실

□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로 설정 · 설립해야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요건 추가(제7-21조 제2항, 제7-22조 제2항 신설)

— 공모집합투자기구 및 일반투자자가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(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제외)로서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시행령 제260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자산으로서 파생결합증권,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 등을 제외한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로 설정 · 설립하도록 함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1) 제7-41조의6 제5항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에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지분증권을 취득한 투자목적회사에 대해서는 이 규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

□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핵심상품설명서 기재항목 등 구체화(제7-41조의3 제1항 신설)

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는 자의 핵심상품설명서 교부의무가 신설(자본시장법 제249조의4 제1항~제3항) 됨에 따라 핵심상품설명서의 기재항목을 구체화

[핵심상품설명서 기재사항]

1. 기본정보	2. 집합투자기구	3. 투자위험	4. 환매정보
• 펀드명칭 • 운용사명칭 • 펀드종류 • 관계사 명칭 • 최소 투자금액 및 만기일자 • 판매 · 환매일정 결산, 이익분배	• 투자전력 • 투자대상자산 • 투자구조 및 최종 기초자산 • 레버리지 한도 • 여유자금 운용 • 펀드재산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 방법 • 보수, 수수료	• 위험도 • 위험요소 • 유동성리스크 및 관리방안	• 환매방법 • 환매수수료

□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 · 설립보고 항목 추가(제7-41조의6 제1항 · 제3항)

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동일하게 투자목적회사 설립 ·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 · 설립보고 항목에 투자목적회사 현황을 추가

□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업무집행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방법 구체화(제7-41조의13 신설)

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 중에서 일정한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기존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도록 함

□ 업무집행사원이 갖추어야 할 투자운용전문인력 자격요건 구체화(제7-41조의14 제1항 신설, [별표] 2의3 신설)

—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요건 중 하나로 투자운용전문인력을 갖추도록 의무화(자본시장법 제249조의15 제1항 제3호) 됨에 따라, 투자운용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을 구체화 함

나.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(2021/10/28 개정 · 2021/12/1 시행)[2)]

1) 개정 이유

□ 주가 상승에 따른 전환가액 상향조정 근거 마련 등 전환사채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

2) 이 규정은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발행하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

2) 주요 내용

□ 전환사채의 발행 제한(제4-4조, 제4-5조, 제5-21조)

— (기존) 다수의 전환사채에 전환사채 매수선택권이 부여되어 발행되면서 최대주주 등의 지분확대 수단 등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

— (개정)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확대를 목적으로 한 전환사채 매수선택권 부여 전환사채의 발행을 제한, 발행사에 공시의무 부과

- 주권상장법인이 그 법인 또는 제3자에게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전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,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발행 당시 주식소유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 할 수 없음
-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을 주요사항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함

[전환사채 행사한도 비교]

* 총 주식수 100, 전환사채 50 발행 가정시

구분	현재 지분		전환사채 행사한도	
	최대주주	특수관계인	최대주주	특수관계인
기존	30(지분율30%)	20(지분율20%)	한도 없음	
개정	30(지분율30%)	20(지분율20%)	15까지 허용 (30%, 45/150)	10까지 허용 (20%, 30/150)

□ 주가 상승에 따른 전환가액 상향조정 근거 마련(제5-23조)

— (기존) 주가 하락시 전환가액의 하향조정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고 있으나, 하향조정 이후 주가가 다시 상승한 경우 상향조정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음

[전환가액 조정제도 현황]

주가 변동	발행주식 수 변동
주가 상승: 전환가액 조정 규정 없음	감자: 지분율 증가비율만큼 상향조정 규정
주가 하락: 발행시 전환가액의 70%까지 하향조정 가능	증자: 지분율 감소비율만큼 하향조정 규정

— (개정) 시가하락에 따른 하향조정이 가능한 사모발행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주가가 다시 상승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범위 내에서 전환가액을 상향조정 하도록 의무 부여

- 조정 범위는 최초 전환가액 한도 이내로 제한(즉, 최초 전환가액의 70~100%)

다.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(2021/10/14 개정 · 시행)

1) 개정 이유

□ 금융회사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시 당사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법적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하여 심사중단 사유 및 심사재개요건을 규정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금융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중단 시 금융위원회에 심사 재개 권한 및 주기적 검토의무 부여(제16조)

—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를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

— 금융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, 국세청, 검찰청,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 · 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,

— 그 소송이나 조사 · 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심사가 중단된 경우 금융위원회에 심사 재개 권한 및 심사 재개 여부 주기적(6개월) 검토의무 부여

• 심사중단 시부터 재개 시까지의 기간을 심사기간에서 제외

라.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(2021/10/14 개정 · 시행)

1) 개정 이유

□ 금융지주회사 인가 및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승인심사 시 당사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법적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하여 심사중단 사유 및 심사재게 요건을 규정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금융지주회사 인가 심사 중단 사유 신설 및 중단 시 금융위원회에 심사 재개 권한 및 주기적 검토의무 부여(제8조)

— 금융지주회사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,

— 금융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, 국세청, 검찰청,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 · 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,

— 그 소송이나 조사 · 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심사가 중단된 경우 금융위원회에 심사 재개 권한 및 심사 재개 여부 주기적(6개월) 검토의무 부여

• 심사중단 시부터 재개 시까지의 기간을 심사기간에서 제외

□ 은행지주회사의 주식보유 승인 심사 중단 시 금융위원회에 심사 재개 권한 및 주기적 검토의무 부여(제12조의2)

— 동일인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,

— 금융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, 국세청,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 · 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,

— 그 소송이나 조사 · 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심사가 중단된 경우 금융위원회에 심사 재개 권한 및 심사 재개 여부 주기적(6개월) 검토의무 부여

• 심사중단 시부터 재개 시까지의 기간을 심사기간에서 제외

마.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 · 신고 등에 관한 규정 (2021/10/28 개정 · 시행)

1) 개정 이유

□ 포상금 산정기준을 상향조정하여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,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에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포함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불공정거래행위의 등급별 기준금액 상향조정(별표 중 2. 기준금액)

— 포상금은 기준금액에 기여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

— 기준금액은 신고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10단계 등급으로 분류되는데, 그 중 3~10 등급의 기준금액을 상향하기 위함

□ 중요도 판단기준 완화(별표 중 2. 기준금액)

— 중요도 판단에는 시장에 주는 영향, 위반횟수, 조치내용 등을 고려

— 그 중 조치내용과 관련한 기준을 완화하여 동일 과징금 조치액에 부여되는 점수를 상향하기 위함

□ 신고 대상 위반행위 부당이득액이 큰 경우 가산점 부여(별표 중 2. 기준금액)

— (기존) 신고를 계기로 조치된 위반행위의 부당이득액이 커도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

— (개정) 부당이득액이 큰 경우(5억원 이상) 가산점을 부여

□ 포상금 지급대상에 시장질서 교란행위 추가(제37조 제1항 제4호)

— 자본시장법 시행령(제384조 제1항)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에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자를 추가하여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제고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